

물질안전보건자료 (MSDS)

최종 개정일자 : 2022-09-21
MSDS No : AA05099-120000006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가. 제품명

- HITEX SB Latex S-801

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- 용도 : 제지용/카펫용/섬유용 접착제/기타 접착제용
- 사용상의 제한 : 자료 없음

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○ 제조자 정보

- 회사명 : (주)한솔케미칼
- 주소 : (55321) 전북 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73
- 전화번호 : 82-63-260-8114
- 긴급 전화번호 : 82-63-260-8114

○ 공급자/유통업자 정보

- 회사명 : (주)한솔케미칼
- 주소 : (06169)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3, 삼성동 K-TOWER 7층
- 전화번호 : 82-2-2152-2341
- 긴급 전화번호 : 82-2-2152-2341

2. 유해성·위험성

가. 유해성·위험성 분류

- 인화성 액체 : 구분3
- 급성 독성(경구) : 구분4

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

○ 그림문자



○ 신호어

- 경고.

○ 유해·위험 문구

- (경구) 삼키면 유해함.
- (경피) 피부와 접촉 시 유해함.

○ 예방조치문구

1) 예방

-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십시오.

2) 대응

- P301+P312 삼켰다면: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/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.

3) 저장

- P403+P233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.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십시오.

4) 폐기

- P501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/용기를 폐기하십시오.

다.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

- 자료 없음.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 및 이명	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	함유량(%)
스타이렌-부타디엔 공중합체 물	SB Latex -	9003-55-8 7732-18-5	49.0 - 51.0 49.0 - 51.0

4. 응급조치 요령**가. 눈에 들어갔을 때**

-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.
- 15분 이상 충분한 물로 세척하고 의사의 진단에 따른다.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

-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.

다. 흡입했을 때

-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.

라. 먹었을 때

-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.

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

-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.

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**가. 적절한(및 부적절한) 소화제**

- 분말소화제, 탄산가스, 일반 포말소화제, 분무
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

- 해당 사항 없음.

다.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

-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시오.

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**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**

-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마시오. 작업자가 위험 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시키시오.
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
-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, 지방환경관리청, 시·도(환경지도과)에 신고하시오.

다. 정화 또는 제거 방법

-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.

7. 취급 및 저장 방법**가. 안전취급요령**

- 공학적 관리 및 개인보호구를 참조하여 작업하시오.

나. 안전한 저장 방법

- 품질 보증 기간 : 6개월 (6개월 경과 시 품질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품질 검증 필요.)
- 저장온도 : 4~40°C. (0°C 이하 보관 시 동결 발생, 60°C 이상에서 성능 저하를 초래 할 수 있음.)
- 장기 저장 혹은 공기 접촉 시 라텍스 필름 형성이 될 수 있으므로 교반 후 필터 처리 후 사용 권함.

8. 누출방지 및 개인보호구**가. 화학물질의 누출기준, 생물학적 누출기준 등**

- 국내노출기준
 - 규정 없음. (자료 없음)
- ACGIH노출기준
 - 규정 없음. (자료 없음)
- 생물학적 노출기준
 - 규정 없음. (자료 없음)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

- 작업자의 증기, 연무, 수증기의 흡입방지를 위해 효과적 환기장치 필요.

다. 개인 보호구

- 호흡기 보호
 -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(유기 화합물용 정화통 및 전면형)
- 눈 보호
 -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(샤워식)를 설치하시오.
- 손 보호
 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안전 장갑을 착용할 것.
- 신체 보호
 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할 것.

9. 물리화학적 특성

가. 외관	
- 성상	액체
- 색	유백색
나. 냄새	미세한 냄새
다. 냄새역치	자료없음
라. pH	6.0 ~ 9.0
마. 녹는점/어는점	-5°C
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	100°C
사. 인화점	자료없음
아. 증발 속도	자료없음
자. 인화성 (고체, 기체)	자료없음
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	폭발성 없음.
카. 증기압	자료없음
타. 용해도	미용해 (수분산 형태)
파. 증기밀도	자료없음
하. 비중	0.95 ~ 1.05
거. N-옥탄올/물 분배계수	자료없음
너. 자연발화온도	해당없음
더. 분해온도	자료없음
리. 점도	Max. 1,000cps
머. 분자량	자료없음

10. 안정성 및 반응성

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

- 권장된 보관과 취급시 안정함.

나. 피해야 할 조건

- 동결 방지 (상온 보관)

다. 피해야 할 물질

- 고분자 응집제와의 접촉

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

- 자료없음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- (호흡기)
 - 자료 없음
- (경구)
 - 삼키면 유해함
- (눈·피부)
 - 자료 없음

나. 건강 유해성 정보

- 급성 독성
 - * 경구 독성
 - 자료없음.
 - * 경피 독성
 - 자료없음.
 - * 흡입 독성
 - 자료없음.
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
 - 자료없음.
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
 - 자료없음.
- 호흡기 과민성
 - 자료없음.
- 피부 과민성
 - 자료없음.
- 발암성
 - *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
 - 자료없음.
 - * IARC
 - 자료없음.
 - * OSHA
 - 자료없음.
 - * ACGIH
 - 자료없음.
 - * NTP
 - 자료없음.
 - * EU CLP
 - 자료없음.
- 생식세포 변이원성

- 자료없음.

○ 생식독성

- 자료없음.

○ 특정 표적장기 독성 (1회 노출)

- 자료없음.

○ 특정 표적장기 독성 (반복 노출)

- 자료없음.

○ 흡인 유해성

- 자료없음.

○ 고용노동부고시

* 발암성

- 자료없음.

* 생식세포 변이원성

- 자료없음.

* 생식독성

- 자료없음.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생태독성

○ 어류

- 자료없음.

○ 갑각류

- 자료없음.

○ 조류

- 자료없음.

나. 잔류성 및 분해성

○ 잔류성

- 자료없음.

○ 분해성

- 자료없음.

다. 생물 농축성

○ 생물 농축성

- 자료없음.

○ 생분해성

- 자료없음.

라. 토양 이동성

- 자료없음.

마. 오존층 유해성

- 자료없음.

바. 기타 유해 영향

- 자료없음.

13. 폐기 시 주의사항**가. 폐기방법**

- 소각 처리할 것.
-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.
-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,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할 것.

나. 폐기시 주의사항

-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(사업장폐기물배출자)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, 폐기물처리업자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,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.
-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.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**가. 유엔번호(IMDG CODE/IATA DGR)**

- 3272

나. 유엔 적정 선적명

- ESTERS, N.O.S.
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

- 3

라. 용기등급(IMDG CODE/IATA DGR)

- III

마. 해양오염물질

- 해당됨
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

- 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.

15. 법적 규제현황**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**

- 작업환경측정물질
 - 해당 없음.
- 노출기준설정물질
 - 해당 없음.
- 관리대상유해물질
 - 해당 없음.
-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
 - 해당 없음.
- 제조등금지물질
 - 해당 없음.
- 허가대상물질
 - 해당 없음.
- PSM대상물질 - 제품:해당됨(인화성액체)
 - 해당 없음.
- 허용기준설정물질
 - 해당 없음.

나.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

- 등록유예기간이 없는 화학물질
 - 해당 없음.
- 중점관리물질
 - 해당 없음.
- CMR(발암성, 생식세포변이원성, 생식독성) 및 CMR 우려 물질
 - 해당 없음.

다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유독물질
 - 해당 없음.
-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
 - 해당 없음.
- 사고대비물질
 - 해당 없음.
- 제한물질
 - 해당 없음.
- 허가물질
 - 해당 없음.
- 금지물질
 - 해당 없음.

라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해당 없음

마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

- 해당 없음

바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

-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
 - 해당 없음.
- EU 분류 정보
 - * 확정분류 결과
 - 해당 없음.
- 미국 관리 정보
 - * OSHA 규정 (29CFR1910.119)
 - 해당 없음.
 - *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
 - 해당 없음.
 - *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
 - 해당 없음.
 - *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
 - 해당 없음.
 - *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

- 해당 없음.

○ 로테르담 협약 물질

- 해당 없음.

○ 스톡홀름 협약 물질

- 해당 없음.

○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

- 해당 없음.

16. 그 밖의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

-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30호(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)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.

- 본 MSDS는 KOSHA, NITE, ECHA, NLM, SIDS, IPCS, NCI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.

나. 최초 작성일자

- 2022-09-21

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

-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이 정보는 근로자 건강, 환경, 안전을 보호하고자, 현재 가용할 수 있는 DB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음.